

제308회 임시회  
2012.4.25(수)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12. 4. 25 (수)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정현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2년 4월 6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4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4월 18일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윤용중인 조례를 공공기관 유치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투자유치 활동 중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 안 제38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2조)
-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 명칭 변경(안 제4조)
-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37조)

##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송장섭)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활동중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지식경제부 고시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내·외 기업”을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2”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민을”을 “도민”으로 한다.

제2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와 제7호의 “10년”을 각각 “7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투자 및 기업유치”를 “투자 및 기업유치,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 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 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 관의 이전-----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 <u>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u> <u>영자”</u> 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u> <u>운영자”</u> 란 법 제2조제1항제 7호-----.  4. ~ 18.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 행	개 정 안
1.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u>건설방재국장</u>	1. ----- ----- <u>균형건설국장</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 <u>충청북도</u> <u>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u>	제19조(지방세 감면) ----- ----- ----- 「 <u>충청북도</u> <u>도세감면조례」 ----- ----- -----.</u>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 <u>도민</u> 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 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도민</u> ----- ----- ----- ----- -----. -----.



현 행	개 정 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u>10년</u>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 ----- <u>7년</u>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u>10년</u>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 ----- <u>7년</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38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도지사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 투자 및 기업유치, 공공기관의 이전-----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령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

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이 착공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일 시군구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지방이전기업은 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지방이전기업은 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